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 제2017-37호 :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2
 - 제2017-3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고시 4
 - 제2017-39호 :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7
- 공 고
 - 제2017-376호 : 세운6-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안) 8
 - 제2017-378호 : 불법명义的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10
 - 제2017-37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2
 - 제2017-380호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37호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17호(1983.09.30)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4호(2011.12.29.)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3-66호(2013.07.17)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3-107호(2013.11.27)로 관리처분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6-82호(2016.09.09.)로 사업시행인가(변경)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6-87호(2016.09.29.)로 공사완료된 우리구 관내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경미한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83)에 비치하고 분양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5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48번지 일대
- 다. 정비구역의 면적 : 4,141.5㎡(대지 : 2,991.5㎡, 정비기반시설 : 1,150.0㎡)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이사 이창희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신안빌딩 12층
- 마.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 2017년 05월 10일
- 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분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층수(층) (지상/지하)	높이 (m)	용 도	비 고
기정	2,959.2	1,757.27	59.38	52,928.89	1,198.07	25/7	119.9	업무시설	2015.05.20
변경	2,991.5	1,775.33	59.35	53,369.33	1,199.95	26/7	119.9	업무시설	확정측량 결과반영

2) 분양 또는 체비지 등의 규모 등 분양계획

가) 분양대상지 및 분양면적

구분	분양대상자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물			비고
	성 명	주 소	토지(㎡)	건물(㎡)	용도	
기정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강남사옥)	1,484.54	26,552.85	업무, 판매, 근생, 문화및잡화시설	
변경	상동	상동	1,381.79	24,651.53	업무, 판매, 근생, 문화및잡화시설	

나) 보류지 시설 : 대상없음 (변경없음)

다) 체비지 시설

- 기정 : 토지 1,474.66㎡, 건물 26,376.04㎡(업무시설)

- 변경 : 토지 1,609.71㎡, 건물 28,717.80㎡(업무시설)

3)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가)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행정청에 무상 귀속)(확정측량 반영)

시설명	기 정				확정측량결과			비 고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지번	지목	편입면 적 (㎡)	
도로 (소로 1-2)	저동1가 67-1	대	45.6	24.5	저동1가 115	도로	24.5	
	저동1가72-5	대	3.2	3.2(추가)	저동1가 116	도로	3.2	
	저동1가72-7	대	2.7	2.7(추가)	저동1가 117	도로	2.7	
	소 계		51.5	30.4			30.4	
도로 (소로 1-3)	저동1가79-1	대	164.3	8.0	저동1가 118	도로	28.2	
	저동1가79-3	대	64.5	22.4				
	소 계		228.8	30.4				
공원 (문화공원)	저동1가 43-3	대	26.4	17.4	저동1가 121	공원	540.7	
	저동1가 43-6	대	65.5	11.0				
	저동1가 48	대	2150.6	17.3				
	저동1가 84	대	46.3	17.9				
	저동1가 90-1	대	63.5	52.9				
	저동1가 90-5	대	66.1	66.1				
	저동1가 90-10	대	148.8	148.8				
	저동1가 91-4	대	185.8	184.6				
	저동1가 90-11	대	19.8	19.8(추가)				
	저동1가 91-3	대	3.1	3.1(추가)				
	저동1가 79-7	대	16.9	2.9	저동1가 119	공원	50.1	
	저동1가 88	대	49.6	31.8				
	저동1가 88-1	대	17.9	17.9				
	저동1가 92-1	대	139.8	139.8	저동1가 120	공원	500.6	
	저동1가 92-2	대	179.5	179.5				
	저동1가 92-3	대	186.8	186.8				
소계		3366.4	1097.6					
계	21필지		3646.7	1158.4	7필지		1,150.0	

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 변경없음

사. 관계서류 : 생략(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비치서류와 같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38호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고시

2017년 5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노거리 호프골목 도로상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및 관광객에게 교류와 휴식의 공간 제공을 통한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노거리 호프골목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2.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처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개선하도록 한다.

제6조(행정처분) 옥외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에 의한 옥외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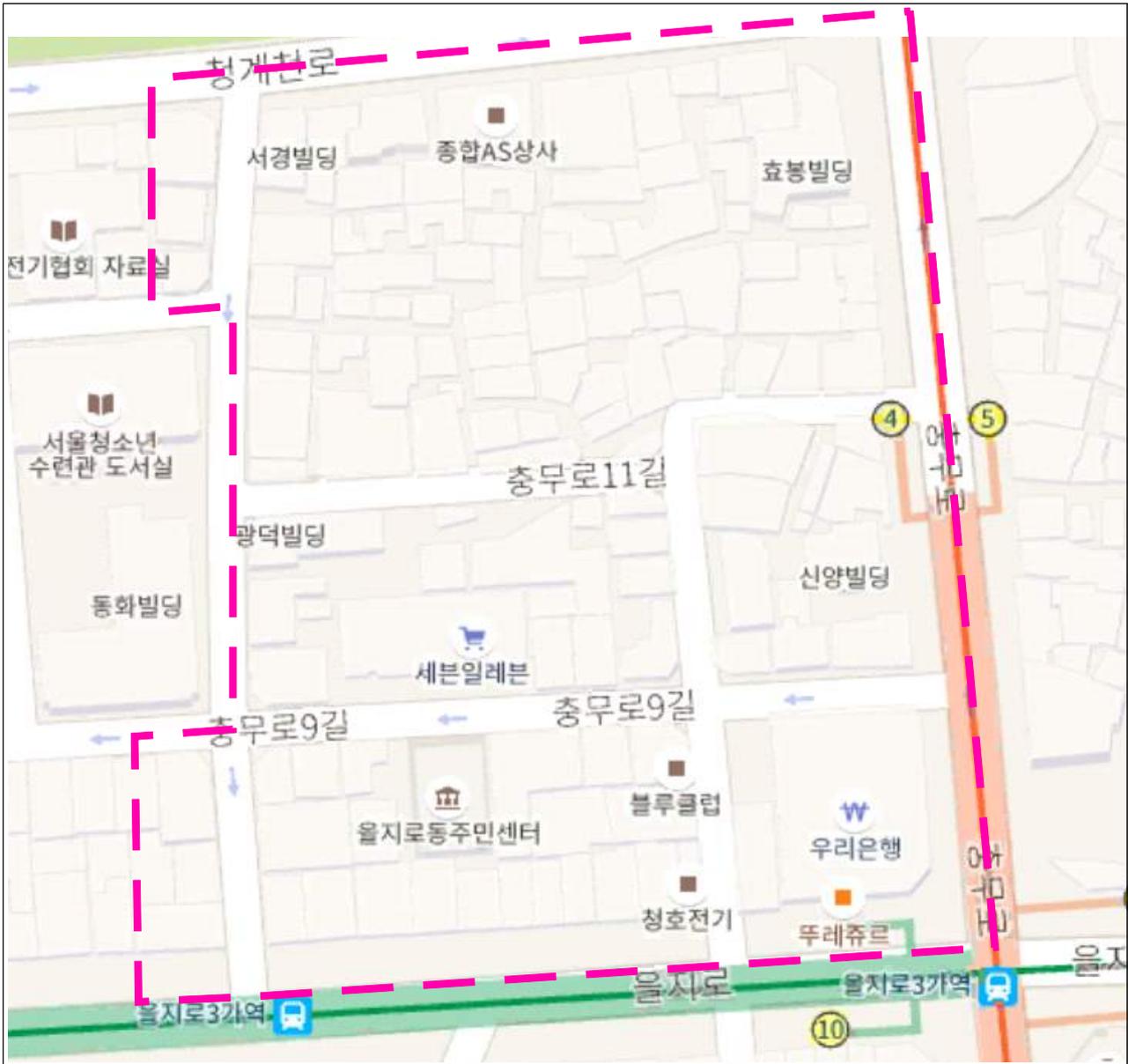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옥외영업장은 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동일 건축물 대지내 1층 전면 공지 등에 한한다.
2.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 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한다.
 - 가. 파라솔 및 차양은 불연성 소재를 사용한 접이식으로, 테이블 및 의자는 플라스틱 이외의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며 재질과 색상은 통일한다.
 - 나. 데크를 설치할 경우 도로경계선에 맞추고 높이는 20cm 이내로 설치하되 초과할 경우 계단식으로 설치한다.
 - 다. 시설물 색상은 단색으로 하며, 중구 강조색의 색상범위에서 주변 환경 및 건축물 외부 마감재와 조화되는 색상으로 선택한다.
 - 라. 시설물로 인해 공용 공간 및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5.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개선하여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 옥외영업 허용 구역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39호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8호(1978.12.29)로 사업계획 결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8호(2009.12.24)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중구고시 제2015-66호(2015.8.13), 제2015-100호(2015.12.10)로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 및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6호(2016.01.20)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37호(2016.4.27)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리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74)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가.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나. 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85-3번지 일대
- 다. 시행면적 : 2,918.9㎡ (대지: 2,444.5㎡, 정비기반시설: 474.4㎡)
-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성 명	에스케이디앤디(주)	(주)생보부동산신탁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
소재지	함스테판운성	김상진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Eco Hub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99 (서초동, 강남매프로빌딩 9층)	

- 마.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2016.1.20.)로부터 60개월
- 바.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7. 5. 17.
- 사.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상/지하)	높이(m)	용도	변경사유
변경전	2,444.5	52.11	995.99	38,235.21	20층/7층	90	업무시설	석축 주변 CIP 간섭에 따른 지하외벽선 변경
변경후	''	''	''	38,254.67	''	''	''	

아. 기타 변경 내용

- 소유권 이전(에스케이디앤디(주)→(주)생보부동산신탁) 및 필지 분할{(서소문동 111-3 → 111-5번지(구역내), 111-3(구역외))}에 따른 관련조서 기재사항 변경
- 자. 관계도서 :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7 -376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119 (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7년 05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

세운6-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안)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세운6-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 공람 · 공고 내용

- 가. 사업명칭 : 세운6-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나. 위 치 : 서울시 중구 을지로4가 310-2번지 일대
- 다. 시행면적 : 5,573.1㎡
- 라. 건축계획 : 지하8층/지상20층, 연면적 62,095.36㎡,
 공동주택(7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마. 정비기반시설 : 녹지 1,293.7㎡

3. 공람기간 : 2017.05.17 ~ 2017.05.31.(14일간)

4. 시 행 자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213호(역삼동, 한신인터벨리24) (☎) 2222-5001
- 성 명 : 더 유니스타제이차(주) 대표 박래영

5. 사업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4개월

6.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53)

7. 관계도서 : 세운 6-3-3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 공람 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 랑 의 견 서

사 업 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공 랑 기 간	2017년 05월 17일 ~ 2017년 05월 31일		
대상물건지	건물 :		
	토지 :		
의견제출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내 용			

2017. .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378호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05월 17일
중 구 청 장

- 1. **공고의 명칭**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공고
- 2. **공 고 기 간** : 2017. 05. 17. ~ 2017. 05. 31.
- 3. **공 고 대 상**
 - 자동차등록번호 : 45여67**외 21대
 - 소유자명 : (주)부*외21대
 - 운행정지 명령일자 : 2017. 04. 01. ~ 04. 30.
 - 운행정지 사유 : 소유자 요청

4.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작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2-3396-62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운행정지 대상

운행정지상태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사용본거지주소	등록일
등록	45067**	(주)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0아길 16-*(신당동)	2017.04.25
등록	16271**	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90길 71-**(신당동)	2017.04.25
등록	47298**	(주)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0아길 16-*(신당동)	2017.04.25
등록	97나75**	(주)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0아길 16-*(신당동)	2017.04.25
등록	40배40**	(주)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번지 ****호	2017.04.25
등록	37노48**	(주)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번지 ****호	2017.04.25
등록	63068**	주식회사 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0아길 16-*(신당동)	2017.04.25
등록	58거92**	(주)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0아길 16-*(신당동)	2017.04.25
등록	80너83**	주식회사 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0아길 16-*(신당동)	2017.04.25
등록	32부73**	(주)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0아길 16-*(신당동)	2017.04.25
등록	05조31**	(주)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0아길 16-*(신당동)	2017.04.25
등록	70라37**	(주)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0아길 16-*(신당동)	2017.04.25
등록	92라16**	(주)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번지 19**호	2017.04.25
등록	90배25**	(주)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0아길 16-*(신당동)	2017.04.25
등록	01조70**	(주)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0아길 16-*(신당동)	2017.04.25
등록	39오80**	(주)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0아길 16-*(신당동)	2017.04.25
등록	03조60**	(주)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0아길 16-*(신당동)	2017.04.25
등록	32주63**	전**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 161, ****호(활학동, 중앙시티빌)	2017.04.19
등록	18무95**	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0길 30, ***동 ***호(신당동, 약수하이츠)	2017.04.18
등록	62도89**	이**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8길 35(신당동)	2017.04.10
등록	38도47**	비엠더블유파 미년설서비스 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층 ****호(회현동2가, 남산스테인드타워)	2017.04.10
등록	서울33거18**	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90길 71-*(신당동)	2017.04.04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379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도시계획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규칙을 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직 정원 15명 증원
[감축] 경비 3, 시설관리 4, 운전 6, 사무운영 1, 사역 1
[증원] 사회복지 15
- 감염병관리 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 신설
[감축] 전기운영 9급 1명
[증원] 보건 7급 1명
- 도시계획 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 신설
[감축] 전산 7급 1명
[증원] 시설(도시계획) 6급 1명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3396-45
13, FAX:3396-8603, 메일:sjg7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 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1,211	851	25	104	231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03	847	21	104	231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7	30	1	11	15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7			7	
6급 소계		231	171	3	20	37
행정		151	109	3	8	31
세무		14	14			
사회복지		7	4			3
전산		1	1			
방호		1	1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녹지		3	3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5			5	
환경		1	1			
시설(토목6, 건축6, 지적3, 디자인1, 도시계획1)		17	17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3			3	
위생		0	0			
운전		3	3			
전기운영(전기)		1	1			

별 직렬별	기관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7급 소계		368	275	9	31	53
행정		215	155	6	8	46
세무		21	21			
사회복지		15	7		1	7
전산		3	3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 전기6, 화공3)		14	14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8	3		5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1	1			
약무		2			2	
간호		9			9	
시설(토목14, 건축12,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1, 교통시설2)		36	36			
방송통신		1	1			
위생		3	3			
시설관리		9	9			
운전		8	8			
전기운영(전기)		1	1			
기계운영(기계1)		1	1			
농림운영(원예)		2	2			
8급 소계		342	252	2	28	60
행정		190	139	2	5	44
세무		32	32			
사회복지		22	6			16
전산		7	7			
방호		2	2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녹지		5	5			
보건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환경		2	2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교통시설1)		35	35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0	0			
운전		6	6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1)		1	1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9급 소계		196	111	6	13	66
행정		51	21	2		28
세무		9	9			
사회복지		25	11			14
전산		2	1		1	
방호		7	6	1		
공업(기계5, 전기9)		14	13	1		
녹지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방송통신		1	1			
위생		4	4			
운전		38	15	2	6	15
전기운영(전기)		4	4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16	7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2	2			
화생방담당		2	2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총 계		1,211	867	25	103	216	총 계		1,211	851	25	104	231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03	863	21	103	216	일반직 계		1,203	847	21	104	231
3급 소개		1	1				3급 소개		1	1			
행정		1	1				행정		1	1			
4급 소개		6	5		1		4급 소개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개		57	30	1	11	15	5급 소개		57	30	1	11	15
행정		36	21	1		14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행정·시설		4	4			
의무·약무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7			7		의무		7			7	
6급 소개		230	171	3	20	36	6급 소개		231	171	3	20	37
행정		151	109	3	8	31	행정		151	109	3	8	31
세무		14	14				세무		14	14			
사회복지		6	4			2	사회복지		7	4			3
전산		1	1				전산		1	1			
방호		1	1				방호		1	1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녹지		3	3				녹지		3	3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5			5		간호		5			5	
환경		1	1				환경		1	1			
시설(토목6, 건축6, 지적3, 디자인1)		16	16				시설(토목6, 건축6, 지적3, 디자인, 도시계획1)		17	17			
시설(토목·건축)		1	1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의료		3			3		보건의료		3			3	
위생		1	1				위생		0	0			
운전		3	3				운전		3	3			
전기운영(전기)		1	1				전기운영(전기)		1	1			

현 행						개 정 안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7급 소계		368	276	9	30	53	7급 소계		368	275	9	31	53
행정		215	155	6	8	46	행정		215	155	6	8	46
세무		21	21				세무		21	21			
사회복지		15	7		1	7	사회복지		15	7		1	7
전산		4	4				전산		3	3			
속기		3		3			속기		3		3		
방호		6	6				방호		6	6			
공업(기계5, 전기6, 화공3)		14	14				공업(기계5, 전기6, 화공3)		14	14			
녹지		3	3				녹지		3	3			
수의		1	1				수의		1	1			
보건		7	3		4		보건		8	3		5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환경		1	1				환경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9			9		간호		9			9	
시설(토목14, 건축12, 지적6, 디자인 1, 도시계획1, 교통시설2)		36	36				시설(토목14, 건축12,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1, 교통시설2)		36	36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위생		3	3				위생		3	3			
시설관리		9	9				시설관리		9	9			
운전		8	8				운전		8	8			
전기운영(전기)		1	1				전기운영(전기)		1	1			
기계운영(기계1)		1	1				기계운영(기계1)		1	1			
농림운영(원예)		2	2				농림운영(원예)		2	2			
8급 소계		343	256	2	28	57	8급 소계		342	252	2	28	60
행정		190	139	2	5	44	행정		190	139	2	5	44
세무		32	32				세무		32	32			
사회복지		19	6			13	사회복지		22	6			16
전산		7	7				전산		7	7			
방호		2	2				방호		2	2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녹지		5	5				녹지		5	5			
보건		5			5		보건		5			5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간호		13			13	
환경		2	2				환경		2	2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교통시설1)		35	35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교통시설1)		35	35			
방재안전		1	1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4	4				시설관리		0	0			
운전		6	6				운전		6	6			
전기운영(전기)		3	3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1)		1	1				사무운영(워드1)		1	1			

현 행						개 정 안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9급 소계		196	122	6	13	55	9급 소계		196	111	6	13	66
행정		51	21	2		28	행정		51	21	2		28
세무		9	9				세무		9	9			
사회복지		14	11			3	사회복지		25	11			14
전산		2	1		1		전산		2	1		1	
방호		10	9	1			방호		7	6	1		
공업(기계5, 전기9)		14	13	1			공업(기계5, 전기9)		14	13	1		
녹지		2	2				녹지		2	2			
보건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위생		4	4				위생		4	4			
운전		44	21	2	6	15	운전		38	15	2	6	15
전기운영(전기)		5	5				전기운영(전기)		4	4			
기계운영(기계)		3	2			1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17	8		1	8	사무운영(워드)		16	7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2	2				나군		2	2			
화생방담당		2	2				화생방담당		2	2			
별정직 계		7	3	4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비서		1	1			
전문위원		2		2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비서		3	1	2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380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효율적 구정운영을 위한 부서 간 분장사무의 합리적 재조정
- 조직변동·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대응력 제고를 위한 담당사무 명확화

2. 주요내용

-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간 업무이관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 : 시장경제과 → 취업지원과(안 제15조·제15조의2)
- 조직변동에 따른 담당사무 명확화
 - 동 주민센터 분장사무 중「찾아가는 동주민센터」관련 조항 신설(안 제41조)
 -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및 사후관리” 삽입
 - 여성가족과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항 신설(안 제21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삽입
- 행정수요 변화 및 부서기능의 연계성을 고려한 분장사무 정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구(자료관→기록관) 정비(안 제10조)
 - 취업지원과 청년 취·창업에 관한 업무 신설(안 제15조의2)
 - 시장경제과 소관 분장사무 구체화(안 제15조)
 - 세무1과 소관 분장사무 구체화(안 제16조)
 - 가로환경과 소관 분장사무 구체화(안 제32조)
 -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40조)
 - 동주민센터 소관 분장사무 구체화(안 제4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3396-4513, FAX:3396-8603, 메일:sjg7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시장경제과) 시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농·수·축산유통 및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4.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에 관한 사항
5.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신고 등에 관한 상
6. 대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7. 전통시장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
9.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0.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1. 소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및 계량기 검사에 관한 사항
13. 동물등록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14.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5.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16.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사항
17. 중구상공회 관리에 관한 사항
18. 위조상품관리에 관한 사항
19.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
14.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5. 청년 취·창업에 관한 사항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세입 총괄에 관한 사항
2.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부동산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현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4. 법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5. 과 소관세목의 소인 및 과오납금 총당환불에 관한 사항
6.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가로환경과) 가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용지(도로·하천·구거 등)의 점용허가 및 관리
2. 공공용지(도로·하천·구거 등)의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3. 공공용지(도로·하천·구거 등)의 용도폐지
4. 세외수입 현계 및 현연도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중선 정비 업무
6.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7.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0. 전통시장 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1. 노점실명제에 관한 사항
12. 보도상 영업시설물 허가 및 관리
13. 사설안내표지판 허가 및 관리
14. 육교현판 사용허가 및 관리
15.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제41조제2항제14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급여,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상담, 신청 접수,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18. 한부모가정 초기상담, 신청접수
44.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및 사후관리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5호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5. (생략)</p> <p>6. <u>자료관 운영 및 보존문서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u></p> <p>7. ~ 9. (생략)</p> <p>제15조(시장경제과) 시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시장의 지도 및 공장등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u></p> <p>2. <u>중소기업 및 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p> <p>3. <u>삭제</u></p> <p>4. <u>삭제</u></p> <p>5. <u>삭제</u></p> <p>6. <u>물가조사 지도단속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u></p> <p>7. <u>농수축산유통에 관한 사항</u></p> <p>8. <u>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에 관한 사항</u></p> <p>9. <u>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신고 등에 관한 사항</u></p> <p>10. <u>삭제</u></p>	<p>제10조(민원여권과)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기록관</u> ----- -----</p> <p>7. ~ 9. (현행과 같음)</p> <p>제15조(시장경제과) 시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공장등록에 관한 사항</u></p> <p>2. <u>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u></p> <p>3. <u>농수축산유통 및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u></p> <p>4. <u>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에 관한 사항</u></p> <p>5. <u>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신고 등에 관한 사항</u></p> <p>6. <u>대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u></p> <p>7. <u>전통시장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p> <p>8. <u>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u></p>

현	행	개	정	안
	11.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2. 대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3. 전통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결정에 관한 사항			9.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0.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1. 소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및 계량기 검사에 관한 사항 13. 동물등록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14.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5.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16.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사항 17. 중구상공회 관리에 관한 사항 18. 위조상품관리에 관한 사항 19.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취업지원과) 취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5조의2(취업지원과)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 14.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5. 청년 취·창업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세입(총괄)에 관한 사항 2.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동산취득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삭제 4. 법인에 대한 지방세 조사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과세표준액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6. 주택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제16조(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세입 총괄에 관한 사항 2.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부동산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현·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4. 법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5. 과 소관세목의 소인 및 과오납금 충당환불에 관한 사항 6.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제21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신 설>			제21조(여성가족과)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p>제32조(가로환경과) 가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지하도·하천·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점용료 부과·징수(총괄)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보상에 관한 사항 4. 가로정비(노상적치물)에 관한 사항 5.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설교통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제32조(가로환경과) 가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용지(도로·하천·구거 등)의 점용허가 및 관리 2. 공공용지(도로·하천·구거 등)의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3. 공공용지(도로·하천·구거 등)의 용도폐지 4. 세외수입 현계 및 현년도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중선 정비 업무 6.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7.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0. 전통시장 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1. 노점실명제에 관한 사항 12. 보도상 영업시설물 허가 및 관리 13. 시설안내표지판 허가 및 관리 14. 육교현판 사용허가 및 관리 15.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p>제40조(의약과)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7.(생략) 8.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9. ~ 22 .(생략) 	<p>제40조(의약과)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7.(현행과 같음) 8.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9. ~ 22. (현행과 같음)
<p>제41조(동장의 직급) ①②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3. (생략) 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선정 및 관리 15.~ 17. (생략) 18. 모·부자가정 조사 및 관리 19. ~ 43. (생략) <p><신 설></p>	<p>제41조(동장의 직급) ①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3. (현행과 같음) 14. 급여,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상담, 신청 접수,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15.~ 17. (현행과 같음) 18. 한부모가정 초기상담, 신청접수 19. ~ 43.(현행과 같음) 44.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및 사후관리